■ 민족문화연구 제92호(2021.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11-242.
http://doi.org/10.17948/kcs.2021..92.211

고려적 國制 운용의 인식적 맥락들*

최종석(崔鍾奭)**

목 차

1. 문제의 소재
2. 중국 제도를 토대로 국제를 운용하는 知的 분위기
3. 황제/제후 제도에 대한 이념적·일관적 선호의 미미·부재
4. 황제/제후 제도의 선호와 그 시대적 제약
5. 황제 제도의 선호와 尊君
6.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베트남의 外王內帝 체제와 이질적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이 어떠한 지적 맥락에서 발현·귀결되었는지를 탐색한 연구 작업이다. 필자는 고려 나름의 이중 체제 양상뿐만 아니라 그러한 양상에 작용한 지적 환경 또한 베트남과는 이질적이었을 것으로 보고, 베트남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간주해 온 종래의 연구와 달리, 고려전기 텍스트를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작업에 의지해서 새로운 지적 맥락을 탐색하였다. 단 이중 체제 가운데 國制 방면에 집중하여 고려 나름의 國制 양상이 어떠한 지적 맥락에서 성립·운영되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했다. 종래의 연구는 고려의 국제가 황제국 체제였고, 그러한 체제는 중국 왕조를 의식한 자주·대등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는데, 본고에서는 황제국 체제와 거리가 먼 고려 나름의 國制 양상이 중국

* 이 논문은 2020년도 동덕여자대학교 연구년 제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대 국사학과 부교수.

왕조를 의식한 자주・대등 의식과는 전혀 다른 지적 맥락에서 성립・운영되었음을 규명해 보았다.

주제어: 國制, 황제 제도, 제후 제도, 중국 제도, 고려, 尊君.

1. 문제의 소재

필자는 몇 해 전 베트남의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실제 양상을 규명한 바 있다.[1] 본고는 이와 짝을 이루는 연구로, 그때 확인된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이 어떠한 지적 맥락에서 발현・귀결되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작업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을 밝히기에 앞서 졸고에서 규명한 바 있는, 베트남과 상이한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실제 양상을 간략히 되짚어보도록 하겠다.

원 복속 이전 고려와 전근대 베트남에서 운용된 이중 체제는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듯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國制와 대외 방면 모두에서 상이하였다. 전근대 베트남의 이중 체제는 외왕내제 체제로, '내제'라는 명칭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국내에서는 황제국 체제가 온전히 구현되었으며, 군주가 신하의 위상에 처해야 하는 외교의 장에서는 '중국' 황제를 대상으로 사대를 행하면서도('奉表稱臣') 국내에서 구가되고 있는 황제 위상의 훼손을 방지할 방안이 고안되곤 하였다. 가령 베트남 군주(황제)는 가명을 사용하여 '중국 왕조'와의 외교 현장에서 베트남 군주(황제)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는 '불편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다. '칭신'의 의미를 어떻게든 퇴색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와 달리 원 복속 이전 고려의 국제는 황제국제가 아니었다. 당시 국제의 전반적인 양상은 황제 제도를 위주로 운용되는 듯한 모습이나 이는 후대인의 시각에서이고,[2]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가 혼용되는 식이었으며, 황제 제도를

1) 최종석,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 『진단학보』 125, 진단학회, 2015.

2) 본래의 글에는 '황제 제도가 위주가 되고 있었다'라는 기술이 있었지만, 필자는 최근의 연구에서 '황제 제도가 위주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현재의 시각에서이지, 당대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을 논증한 바 있다. 최종석,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의 대립 항인 제후 제도를 함께 사용하곤 하는 등 일관적이지도 철저하지도 않은 경우들이 심심찮았다. 반면 '외왕'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맞물려 '稱臣'에 따른 군주 권위의 손상을 우려하는 생각 자체가 보이지 않았고, 베트남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칭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자 한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3]

졸고에서 규명한 고려전기 이중 체제 양상이 어떠한 지적 맥락에서 발현·귀결되었는지를 탐색하는 데서 베트남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의 경우 國制와 대외 방면에서 노정된 양상은 서로 연관된 현상으로, '중국 왕조'를 의식하면서 발휘된 대등의식을 배경으로 구현되었다.[4]

베트남은 1000여 년에 걸친 '중국'에 의한 직접 지배의 경험이 있는 데다가, 독립 이후로도 '중국'으로부터 빈번한 무력 침략을 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였기에,[5] '중국'을 상대로 강한 저항정신을 지녔고 '중국'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면이 있었으며, 이와 맞물려 '중국'과 대등하다고 하는 의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北國인 중국과 동등한 존재로서 자국을 인식하는 '南國意識'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환경 속에서 베트남은 국내 방면에서는 '중국'을 의식하면서 목적 의식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지향·운영하였다.[6] 이와 맞물려 대외적으로는 '중국 왕조'에 '稱臣'을 표명하면서도 황제로 불리는 군주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해 내었을 것이다. 베트남이 목적 의식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지향·운영하였음에도 대외 방면에서 '외왕'의 표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국력 면에서 '중국 왕조'에 비해 소국이면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역사학보』 250, 역사학회, 2021 참조. 이 사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금 언급하도록 하겠다.

3) 내용 소개는 최종석, 앞의 글, 2015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4)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曲氏の擡頭から清佛戰爭まで—』, 山川出版社, 1975; 桃木至朗, 『中世大越國家の成立と變容』, 大阪大學出版會, 2011;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2012. 陈文源, 「13-15世纪安南的国家意识与文化取向」, 『世界历史』, 中国社会科学院世界历史研究所, 2014年第6期.

5) 영락제 시기에 명은 베트남(안남)을 점령하여 자국의 영토 내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명에 의한 베트남 직접 지배는 베트남인의 강렬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오래가지 못하였다.

6) 桃木至朗, 앞의 책.

에게, '중국 왕조'를 상대로 한 '칭신' 거부, 달리 보자면, 대외적 '칭제'는 '중국'과의 항시적인 긴장 상태-전쟁 포함-의 초래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베트남은 '중국'과의 평화 공존을 원하는 한, '중국'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한, 대외적으로는 상하 차등적 관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국내에서 황제로 불리는 자국 군주의 권위가 '칭신'의 표명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외왕'을 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효화 되도록 하는 각종 방안을 강구·시행하였던 것이다.[7]

베트남에서 운용된 외왕내제 체제의 특징 아래 놓여 있는 인식적 맥락은 원 복속 이전의 고려가 어떠한 지적 맥락에서 베트남과 상이한 나름의 이중 체제를 운영하였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즉 國制와 대외 방면 모두에서 베트남과 상이한 고려적인 이중 체제 양상은 '중국 왕조'를 의식하면서 발휘된 대등의식과는 상이한 지적 환경 아래에서 구현되었을[8]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왕의 연구에서는 고려의 이중 체제를 외왕내제의 이중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9] 고려의 외왕내제 체제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도 명시적일 수도, 암묵적일 수도 있지만, '내제'는 事大의 대상인 '중국'을 의식한 자주·대등 의식 의식에서 비롯되었고 '外王'은 실리 차원에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래의 연구는 비단 이중 체제뿐만 아니라 지적 환경 역시 베트남과 다르지 않다고 본 셈이다. 종래의 연구는 이중 체

7) 山本達郎 編, 앞의 책; 陈文源, 앞의 글 참조.

8) 고려전기의 國制와 대외 방면 역시 중국을 의식한 자주·대등 의식과는 다른 '무엇'(들)을 바탕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9) 송기호, 「대외관계와 국가위상」, 『(개정신판)한국사특강』, 서울대 출판문화원, 2008; 박한남, 「고려시대 대외관계사의 흐름과 서희의 위상」,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2008; 박종기, 『고려사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5, 162면. 최근의 개설적 연구에서도 "고려는 밖으로는 국왕을 칭하고, 안으로는 황제를 칭하는 '외왕내제'의 이중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여, 고려전기에는 외왕내제의 체제가 운용되었다고 하였다. 이익주, 「10-12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려」, 『동아시아사 입문』(동북역사재단 편집부 편), 동북역사재단, 2020, 266-267면 참조. 한편 직접적으로 외왕내제의 이중 체제를 언급하지 않아도,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를 부각·규명한 연구성과는 당시 고려가 외왕내제의 이중 체제를 운용하였음을 우회해서 말한다고 하겠다. '외왕'은 상수로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의 양상을 외왕내제 체제로 본 것도 그렇고, 그러한 체제가 중국 왕조를 의식한 자주·대등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구체적 논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에 맞춰 접근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한 듯싶다.

필자는 양상뿐만 아니라 고려 나름의 이중 체제 양상에 작용한 지적 환경 또한 베트남과는 이질적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 복속 이전의 고려가 國制와 대외 방면의 양상 면에서 모두 베트남과 상이했어도 우연히도 이중 체제 아래 놓여 있는 지적 환경은 같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할 확률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살펴보듯 실제로도 지적 환경은 사뭇 달랐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종래의 익숙한 해답과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고려전기 텍스트를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작업에 의지해서 아직 밝아보지 못한 새로운 지적 맥락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단 國制와 대외 방면 가운데 더 관건이 되면서도 다루기에 용이하지 않는 國制에 집중하여 고려 나름의 國制 양상이 어떠한 지적 맥락에서 성립·운영되었는지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양해를 구해야 할 점은 본고가 시론적 성격의 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실이다. 국제의 양상을 검토하긴 했어도, 國制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실상 파악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탓에, 고려 나름의 國制 양상에 작용한 지적 환경에 관한 탐색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 아래 있다. 또한, 후술하듯 불규칙한 國制 양상을 직조한 다양하고도 층위를 달리하는 지적 요인들 및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온전히 파악하는데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려전기의 국제 양상 아래 놓여 있는 인식적 맥락을 탐색하려는 본 연구는 이 방면 연구의 서막에 불과한 것이다.

2. 중국 제도를 토대로 국제를 운용하는 知的 분위기

고려 나름의 國制 양상이 어떤 지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후대인의 감각에서이긴 하나 황제 제도를 위주로 운용되는 듯한 모습, 황제와 제후 제도의 混種的 면모 그리고 일부 황

제(제후) 제도의 불철저한 운영 등의 고려전기 國制 양상이 이러한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목적의 산물이 아니었을 사실이다. 이러한 國制 양상에 일정한 규칙(패턴)이 있다면, 이것의 구현을 목표로 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로 해당 양상이 구현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려전기의 國制 양상에서 뚜렷한 규칙(패턴)은 발견되지 않고, 대신 불규칙한 면모만이 심심찮게 확인될 따름이다. 고려전기 國制 양상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움직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고려전기 國制 양상의 구현은 다소 맹목적 움직임들의 수렴 결과라 생각된다.

이렇다고 하면 고려전기 國制 양상의 구현에 작용한 특정하고 명확하며 결정적인 '무언가'의 지적 환경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게 된다. 황제국제에 관한 연구에서 보이는, 고려는 중국을 의식한 자주·대등 의식 아래에서 황제국제를 구현하고자 했고 그 결과로 황제국제가 실현되었다고 하는 식의 논리 전개에서는, 특정 국제를 야기한 단수이면서도 명확한 지적 환경의 설정이 가능하다. 어떠한 국제가 중국을 의식한 자주·대등 의식과 같은 단수의 특정 목적의식 아래에서 해당 國制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하면, 특정 국제를 야기한 지적 환경을 찾는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전기 國制 양상은 단수인 특정 의식을 동력 삼아 목적의식적으로 구현되지 않았기에,[10] 그 양상을 촉발한 결정적이고 확실한 지적 환경의 발견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이다. 그 대신 불만족스럽고 명료하지도 않겠지만, 복수의 그리고 層次를 달리하는 의식들이 작용하여 고려전기 國制의 양상을 구현해 낸 과정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11]

---

10) '대일통'을 의미하는 '일통의식'을 이념적 기반으로 해서 황제(천자)국 체제가 성립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박종기, 「고려 다원사회의 형성과 기원」,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참조. 그런데 고려에 '대일통' 의식이 존재했는지 여부, 존재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일관적으로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논증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대일통' 의식이 황제(천자)국 체제를 성립할 수 있게 한 과정 또한 입증되지 못하였다.

11) 특정 이념이나 목적의식에 따라서 어떠한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정합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방식에서가 아니라, 특정 이념이나 목적의식의 미미함·부재 속에서 그때그때의 사안을 해소하는 움직임들이 축적되고 수렴되는 식으로 國制 양상이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필자의 시각은 고려 제도 전반의 성립·운영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가령 行守制 도입·운용의 양상에서 이러한 면모

우선, 고려 나름의 국제 양상을 구현하는 데 동인으로 작용한 지적 환경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용·활용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후술하듯, 이것은 가장 저변에서 작용한 의식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고려전기의 국제는 그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황제국 체제도, 제후국 체제도 아니었다. 고려전기의 국제는 특정한 성격을 부여하긴 어렵지만, 중국

를 읽을 수 있다. 권영국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관계와 관직의 품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양자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관직 앞에 '行' 또는 '守'를 붙이는 제도로써 唐代에 성립된 행수제는 고려에서는 운용될 수 없었다. 본래의 행수제는 관계와 관직의 품계가 일치하는 운영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제도인데, 고려는 관계와 관직의 품계를 일치시키는 관료제 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고려에서는 본래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수제가 수용·운용되었다. 즉 고려시대의 행·수직은 당이나 송에서 실시된 행수제와 달리, 산직제가 실시된 이후 산직과 실직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 두 직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실직 앞에 '행' 또는 '수'를 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해당 경우에 '행'이나 '수'를 꼭 칭하는 것도 아니었다. 본래의 행수제에서는 '行'(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과 '守'(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를 칭하는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었지만, 고려에서의 '行'과 '守'는 산직과 실직을 동시에 가진 경우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보니, '행'이나 '수'를 칭하는 데에 일정한 기준이나 규칙이 있을 수 없었다. 또한, 제도 운용 초기에는 수직과 행직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점차 수직은 사라지고 행직만 남게 되었는데, 이는 현종대부터 일반 수직과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三師, 三公의 수직이 광범하게 제수되고, 원 간섭기 이후에는 副의 의미를 가진 수직이 등장하면서 이들과의 혼동을 피하고자 일반 수직은 더는 사용되지 않았던 데서였다. 고려의 행수제에 관한 이상의 서술은 권영국, 「고려전기의 행직(行職)과 수직(守職)」, 『역사와 현실』 86, 한국역사연구회, 2012를 참고로 하였다. 이처럼 행수제 운용의 양상은 제도의 본래 모습과 무관하게 그때그때 맞닥트린 문제를 해소한 결과들이 축적되고 수렴되어 성립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이념이나 목적의식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정합적으로 구축된 제도와 운영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고려시대 위계제의 도입·운용 역시 다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문산계, 무산계, 향직이 수여 대상을 달리한 채(서로 간 중복되기도 함) 함께 운용되었는데, 이러한 식의 운용은 당초에 의도된 것이 아니라 시차를 달리하면서 그때그때의 사정과 필요에서 각 위계제가 도입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각 위계제의 수여 대상 또한 해당 위계 제도의 본래 수여 대상이 아니라, 제도 도입 당시에 모종의 이유에서 수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선택되는 식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배재호, 「고려전기 武散階와 鄕職의 수여 배경과 운용」, 『한국사론』 66, 서울대 국사학과, 2019를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이념이나 목적의식의 미미함·부재 속에서 그때그때의 사안을 해소하는 움직임들이 축적되고 수렴되는 식으로 성립되었을 양상을, 만약에 귀착된 결과만을 놓고 그것이 특정한 이념이나 목적이나 지향의 결과라고 파악한다면, 그러한 접근 방식은 몰역사적이고 탈맥락적인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모종의 이념이나 목적의식에서 정형적인 국제 양상이 구현되었다는 전제에서 탈피하여 불규칙한 모습을 노정하는 국제 양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특정한 목적의식이 부재하거나 미미한 속에서 그러한 國制 양상이 구현되어 간 과정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제도로 구성된 국제—이를 '중국적' 國制라 칭할 수 있을 것—의 일종이라고는 할 수 있다.[12]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가 혼재된 데서건, 일부 황제(제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대립 항인 제후(황제) 제도를 혼용하는 불철저한 모습에서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인 황제/제후 제도는 공히 중국 제도였다.

중국 제도의 활용은 주지하듯 고대 이래로 있어 왔지만, 제도 전반이 사실상 중국 제도 일색이 된 것은 특정 시점 이후부터였다. 구체적으로 그 시점은 대폭적인 당송 제도(특히 당제)의 수용이 이루어진 고려 성종대라고 할 수 있다. 성종대 이전까지 국제는 고유한·비중국적 제도가 드물지 않게 운용되어, 그것과 중국 제도가 공존하는 양상을 노정하였다. 그러다 성종대를 분수령으로 국제는 사실상 중국 제도로만 구성되기에 이르렀다.[13]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에서 언급하는,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의 混種的 면모, 일부 황제(제후) 제도의 불철저한 운영 등을 특징으로 한 고려전기 國制 양상은 성종대 이후 시기에야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

이처럼 고려전기의 國制가 '중국적' 국제의 자장 내에서 성립·운용된 점에서, 중국 제도를 토대로 국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 분위기는 고려전기 國制 운용 구현의 지적 동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고려시대 다원적 천하관의 배경으로, "고려시대에는 전시대와 달리 본격적인 유교정치문화가 성립되어, 유교 이념에 따른 정치적 덕목, 君主像, 官人像, 군신관계, 관리선발을 비롯한 인사제도, 禮制, 관제, 정치운영방식 등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유교정치문화 속에서 고려가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12) 황제국 체제, 제후국 체제도 '중국적' 國制의 일종이었음은 물론이다.

13)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세종실록』 권125, 세종 31년 7월 4일 임오. "三國之時, 朴略少文, 罕與中國通, 其不知僭也固宜. 高麗嘗建元稱制, 僭擬之事頗多, 其後雖去年號, 而禮文儀章 實與中國無異, 非獨祭天一事, 而何怪其僭擬也哉."

14) 필자는 일부 황제 제도의 활용을 근거 삼아 성종대 이전 고려의 국제마저 황제국 체제(황제의 나라)로 간주하는 시도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다. 고려 더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황제국 체제(황제의 나라)를 논하는 시도 자체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부적절한 까닭은 성종대 이전에도 제후 제도가 혼용된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非중국적 제도가 드물지 않게 활용되고 있음에서다. 일부 황제 제도의 활용과 황제국 체제는 질적으로 상이한데, 일부 황제 제도만을 주목하면서 무분별하게 황제국 체제를 운용한 시기나 국가를 확장하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 군주가 독자적 천하의 천명을 받았음을 표방하게 될 때 천자·황제의 칭호는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15]라고 한 탁견이 참조된다. 고려의 국제가 황제국 체제였다든가, 그러한 체제가 자주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든가 하는 견해에는 찬동하진 않지만, 황제국 체제가 전시대와 달리 본격적인 유교정치문화의 성립을 배경으로 하였다고 한 지적은 매우 주목해야 할 바라고 하겠다.

이 견해를 필자의 논지에 맞춰 전유해 보자면, 원 복속 이전의 고려는(성종 이후) 前代에 비해 본격적으로 유교정치문화를 수용·활용하고 있었고, 이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중국 제도를 토대로 한 제도 운용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의 混種的 면모, 일부 황제(제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대립 항인 제후(황제) 제도를 혼용하는 불철저한 모습 등을 특징으로 한 고려전기 國制 양상이 전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교정치문화라는 자장, 중국 제도를 토대로 국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하는 知的 분위기는, 고려와 상이한 베트남의 외왕내제 체제의 인식적 기반으로도 작용할[16] 정도로, 고려전기 국제에 작용한 지적 환경 가운데 가장 저변에 자리하였을 遠因에 해당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러한 지적 분위기 하에서는 황제국 체제도, 제후국 체제도, 고려 나름의 국제 양상도 모두 성립 가능한 것이다. 고려 나름의 국제에 작용한 지적 환경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직접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것이다.

3. 황제/제후 제도에 대한 이념적·일관적 선호의 미미·부재

최근 필자는 고려전기에 자주 의식이라는 목적의식 아래에서 의도적으로 황제 제도를 선택하였고 당시 국제는 이렇게 선택된 황제 제도가 위주가 되어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는 통설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려전기의 당대

15) 노명호,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한국사연구회, 1999, 37-38면.

16) 桃木至朗, 「ベトナムの「中国化」」, 『變わる東南アジア史像』(池端雪浦 編), 山川出版社, 1994; 桃木至朗, 앞의 책 참조.

인들은 황제 제도를 위주로 국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을, 달리 말해, 고려전기의 국제 운영은 대부분의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 황제 제도를 의도적이고 일관적으로 선택·운용하는 식이 아니었을 것을 검토하였다.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다. 일부 제도는 고려전기의 당대인들에게도 황제 제도로 인지는 되었으나 당시의 지적 분위기 속에서 황제 제도로 의식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선택 내지 회피되지 않았다. 고려전기에 이미 이들 제도와 관련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은 존재하였고(가령 조서-교서의 이항대립), 당대인들도 이들 제도가 각각의 이항대립에서 황제 제도에 해당하였음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지만, 이들 제도를 이항대립 가운데 황제 제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도적이고 일관적으로 선택·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맞물려 선택·운용된 황제 제도는 그것의 대립 항인 제후 제도와 혼용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다른 일부는 현재의 감각 속에서는 의문의 여지 없이 황제 제도로 간주되나, 고려전기 당시에는 아예 황제 제도로 인지되지도 못하거나 황제 제도 여부가 모호하였다. 이들 제도의 제후(국)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事前에 '명확히' 구비되어 있지 못하였고, 곧 이러한 제도와 관련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은 부재하였고, 이와 맞물려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황제 제도로 인지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이들 제도가 황제 제도로 인지된 것은 후대에 가서였다.[17]

즉 고려전기 당시에는 황제 제도를 위주로 제도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 기껏해야 황제 제도가 드물지 않게 운용되는 식이었을 것이다. 또한, 제한적으로 활용된 황제 제도조차 중국을 의식한 자주(대등) 의식을 바탕으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 황제 제도를 선택한 결과가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제도 운용의 과정에서 되도록 제도 전반을 황제 제도로 운용하겠다고 하는 지적 분위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 속에서 목적 의

17) 최종석, 앞의 글, 2021 참조.

식적으로 황제 제도를 선택하는 지적 환경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 당시 활용되고 있던 일부 제후 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역시도 목적 의식적으로 선택된 결과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려전기에는 황제 제도로 인지되지도 못하였을 제도가 드물지 않게 존재하였으며, 황제 내지 제후 제도를 대상으로 한 이념적이고 일관적인 선호가 미미·부재하였다. 그러다 보니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의 혼용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적 상황 속에서 앞서 언급한, 중국 제도(주로 당제)를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적 분위기라는 요인은 현재 우리의 눈에 황제 제도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양상을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중국 제도의 도입·운용 과정에서 자주 의식(대등의식) 내지 이와 대립되는 (제후)명분 의식 따위의 특정한 목적의식이 의미 있게 작용하지 못하는 지적 여건에서, 중국 제도를 전면적이다시피 수용·운용한 움직임은 후대인의 시각에서이긴 하나 의도치 않게 황제 제도를 위주로 한 국제 운용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러하다.

중국 제도(당송 제도 그중에서도 당제)를 대폭 수용하여 운용한 제도 가운데 일부분은 현재의 감각 속에서는 황제 제도로 간주되나 원 복속기 이후에야 황제 제도로 인지된 제도였을 것이다. 이러한 類의 제도는 당시 고려 측에게 황제 제도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수용하여 운용된 중국 제도일 따름이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전기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와 관련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 자체가 부재하였고, 그러하였기에 이들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항대립 가운데 황제 제도를 선택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다.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 자체가 부재한 중국 제도라 해도, 황제국인 중국에서 운용되었거나 운용되고 있는 제도인 데서, 고려의 당대인들이 이를 황제 제도라 인식하면서 도입·운용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순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긴 어려울 듯싶다. 고려전기에 이들 제도를 황제 제도로 인식한 사례는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재했으나

기록이 적게 남은 사정에서 현재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 황제 제도로 인지되고 있는 것조차 그것의 대립 항인 제후 제도와 혼용하여 사용되곤 한 지적 환경을 감안할 때,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 자체가 부재한 제도를 황제 제도라 인지・의식하면서 이들을 도입・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아래의 인용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詔書를 敎書로 고치는 식의 華風 중심의 관념을 보여주었던 성종조차도 皇帝 제도의 수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圓丘, 太廟, 社稷, 籍田 등과 3성 6부 및 중추원 등의 황제 제도를 도입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이 황제의 제도를 적극 도입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성종은 화풍을 너무 추구하여 李知白 같은 인물로부터 반발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한 성종이 자신을 짐이라 하고, 서경 행차를 巡狩라고 하는 등 황제의 제도를 도입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성종이 조서를 교서로 개칭하는 등 화이론적 시각을 갖기는 했지만 그 역시 왕과 황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고 그래서 황제 제도의 도입과 운영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18]

이 인용문은 성종·최승로로 상징되는 소위 화이론적 천하론 계열의 인물이 정국을 주도한다고 일컬어질 정도로 상대적으로 제후 명분을 강조하는 성종대(전반)에,[19] 조서를 교서로 고치는 식의 제후 명분을 의식한 움직임이 있으면서—동지사를 제외한 채 원구제 수용, 교서 내 朕 사용의 최대한 회피 등을 포함해서 그러함—, 그와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각종 '황제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운용된 사실을 잘 지적하고 있다. 제후 명분을 중시하여 일부 '황제 제도'를 제후국의 위상에 걸맞게 격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황제 제도'를 대거 수용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꼬집은 것이다. 흔히 성종대는 제후 명분에 사로잡힌 이들이 정국을 주도한 시기라 이해되고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려를 황제의 나라로 간주하게 된 것은 사실상 성종대 각종 '황제 제도'의 수용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

18) 박재우, 「고려 君主의 국제적 위상」, 『한국사학보』 20, 고려사학회, 2005, 53-54면.
19) 노명호, 앞의 글, 23-25면.

인용문의 저자는 이러한 모순을 '왕과 황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였을' 데서 찾았으나, 이해 정도가 요인으로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순 없어도, 이 사안에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위 인용문에서도 모순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모순이 성종대 당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황제 제도'라 하여 따옴표를 붙인 것은 현재 우리의 눈에는 성종대에 '황제 제도'를 대거 수용하였다고 비치지만, 성종대 당시에 이것은 황제 제도로 인지되지 못했을 것인 데서다. 당시 수용된 제도들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이항대립 자체가 부재한 제도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가령 3성 6부 및 중추원 등의 정치제도가 그러한 것이었을 테다. 성종대에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唐制를 위주로 한 이들 '중국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인데, 이들 '중국 제도'는 현재 우리의 눈에는 황제 제도로 비치지만 당시의 지적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후 명분에 민감하였다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조차 '황제 제도'로 포착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성종대에 조서를 교서로 고칠 정도로 상대적으로 제후 명분을 강조한 이들이 '황제 제도'를 대거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황제 제도'를 위주로 하여 국제를 운용하게 된 역설적 현상은, 이들이 수용한 것이 후대에는 '황제 제도'로 간주되는 것이었으나 그 당시의 감각에서는 이와 무관한 唐制를 위주로 한 '중국 제도'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혹은 유사한 맥락에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존재한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도, 목적 의식적으로 황제 제도를 선호하지 않았어도 황제 제도를 위주로 한 도입·운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황제 내지 제후 제도를 대상으로 한 이념적이고 일관적인 선호가 미미·부재한 당시의 지적 분위기에서는, 형식 논리상으로만 생각해보자면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선택이 몰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양상은 마치 목적 의식적으로 황제 제도를 선택한 데 따른 결과와 유사해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이들 이항대립 관련한 제도의 도입·운용 당시에 내세워지는 것 또한 황

제 제도보다는 중국 제도였을 것이다. 그러했음에도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 가운데 황제 제도가 주로 선택된 까닭은 제후 제도가 아니라 황제 제도가 도입·운용하고자 하는 당제(송제)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개는 수용하고자 하는 당제(송제)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된 제도인 황제 제도를 도입·운용하지, 그것의 대립 항으로 황제국인 당(송)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활용되었을 제후 제도를 굳이 도입·운용하려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제후 명분을 선호하는 쪽조차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의 성향을 지닌 쪽과 별반 다르지 않게 황제 제도를 도입·운용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감각 속에서는 황제 제도보다는 중국 제도가 우선시되었던 것이다. 동전의 양면 격으로 상대적으로 제후 명분을 선호하는 쪽과는 반대 성향을 지닌 이들도 도입·운용한 것이 황제 제도라고 뚜렷이 의식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제도가 황제 제도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면, 제후 제도와의 각종 혼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존재한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도, 목적 의식적으로 황제 제도를 선호하지 않았어도 당제(송제)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된 제도(결과적으로는 황제 제도)를 주로 도입·운용한 결과 때문에, 황제 제도를 위주로 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편, 황제 제도 위주의 활용은 목적 의식적으로 황제 제도를 선호한 결과에서가 아니다 보니, 적게나마 제후 제도의 혼용도 이루어졌을 것이다.[20]

4. 황제/제후 제도의 선호와 그 시대적 제약

지금까지의 검토 작업은 건설 공사로 치자면 골조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20) 기우에서 언급하자면, 필자는 고려전기에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를 혼용한다든가,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부재한 제도를 황제 제도로 인지·의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든가 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관련 지식은 부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관건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 너머에서 한 시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패러다임 식의 인식 체계였을 것이다.

수 있다. 이후로는 마감 공사에 해당하는 보다 세부적인 사안에 국한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본 장에서는 지배층 내에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를 대상으로 한 선호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작용하는 양상 및 그러한 데서 노정되는 시대적 제약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조서를 교서로 바꾸기도 하고[21] 교서를 조서로 복구하는 사례[22]에서 알 수 있듯이,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을 놓고 선호의 차이는 지배층 내에 존재하였을 것이다. 곧 고려 지배층 내에는 황제 제도를 선호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제후 제도를 선호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호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차이의 내용과 성격일 것이다. 이러한 선호 차이는 종래의 견해대로 어떤 이들은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 황제 제도 일반을 견지하고 다른 이들은 제후 제도 일반을 견지하는 식이 아니었다. 어느 쪽이건 목적의식적으로 혹은 이념 지향적으로 황제국제/제후국제를 구현하고자 하지 않았고, 후술할 당시의 지적 환경 속에서는 제한적으로 황제/제후 제도를 선호하였을 따름이었다.

당시의 지적 환경에서는 이러한 선호 차이와 상관없이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부재한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는 공히 황제 제도와 연관하여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존재한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도 선호를 달리하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선호가 다를 수 있는 이들 사이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된 황제 제도類—경우에 따라서는 제후 제도類[23]—를 놓고 별다른 이견 내지 논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령 표문(황제 제도)과 王師(제후 제도)의 운용을 놓고 지배층 내에서 의견 차이가 노정된 적은 없었고, 상이한 성향의 세력이 국정을 주도한 시기에 따라 각각의 대립 항으로 뒤바뀌는 일도(황제 제도⇄제후 제도) 거의 없었다.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을 놓고서도 선호

21)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5년 3월. "始以詔稱敎."
22) 최종석, 앞의 글, 2015, 20-21면 참조.
23) 황제 제도類가 대다수일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사용된 제후 제도類도 드물지 않았다.

를 달리하는 경우보다는 공통분모가 훨씬 많았던 것이다. 선호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질적인 차이로 보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그룹 간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여서, 선호 차이를 과장하거나 확대해석해서도 곤란할 것이다.[24]

한편, 지배층 내에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을 놓고 선호의 차이가 있곤 하면서도,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 가운데 어느 것을 선호하는 쪽이든 황제국제/제후국제의 구현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러하다.

우선 제후 제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황제 제도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후 제도로 바꾸었을 뿐이고, 도입하는 중국 제도들 가운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제후 명분을 감안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제후 제도가 무엇인지 비교적 뚜렷하게 인지되는 경우에조차, 그 대립 항인 황제 제도가 사용되어 온 현실을 간과하거나 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게 드물지 않았다. 이들은 일부에 한정해서 제후 제도를 선호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하다 보니 성종대에 조서를 교서로 바꾸면서도 표문(주문)은 그대로 두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 것이다. 또한, 명분을 감안하여 공식적으로 추진한 제후 제도의 운영마저 철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가령 성종대에 조서를 교서로 개칭한 조치와 맞물려 '짐' 용례의 사용을 이전보다 자제하긴 했지만, '짐'의 사용은 철저하게 회피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에서 설령 고려전기에 관료가 전부 제후 제도를 선호한 인물로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제후국 체제의 구현은 애초에 요원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부재한 제도를 차치하고서도 말이다. 이들이 보인 제후 제도를 향한 선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제후 제도를 선호한 인물이 후대처럼 제후라는 위상을 주체적, 자기 신념적으로 수용하고 제후(국) 명분에 온전히 걸맞은 체제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는[25] 식으로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 제후 제도의 선호가 고려전

24) 최종석,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73-174면 참조.

기 당시의 지적 환경(에피스테메) 속에서 구현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규정・명명해야 하는지는 향후의 숙제일 터인데, 잠정적으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후 제도를 선호하는' 인물들로 칭해 볼 것이다.[26]

그런데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후 제도를 선호하는' 이들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27]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영향력도 제한적이었으며, 자신의 의사를 국가의 제도에 관철할 수 있는 시기도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렇기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후 제도를 선호하는' 이들보다는 황제 제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수적으로든, 영향력 면에서든, 시기 면에서든 사실상 국제를 좌지우지한 데서,[28] 이들의 지적 성향이 고려전기 국제 양상의 성립・존속에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황제 제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이들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후 제도를 선호하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황제 제도를 선호하였다. 비록 그 범위가 제후 제도를 선호하는 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넓었지만 말이다. 이 때문에 설령 고려전기에 관료가 전부 황제 제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로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황제국 체제는 구현되지 못

25) 후대의 이들은 제도 전반을 제후 명분에 온전히 걸맞도록 몰두하였을 것이다. 가령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을 놓고서는 의식적이고 일관되게 제후 제도를 선택하였을 것이고,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부재한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항대립을 창출한 후 제후 제도를 선택・운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 담론과 예제 질서』, 소명출판, 2016을 참조하기 바란다.

26) 이러한 인물은 제후 제도를 불철저하게 운영하는 성향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필자는 선행 연구들에서 고려전기에 화이론자를 설정하면서 이들이 조선의 화이론자와 동질적이었을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려전기에 화이론자로 간주된 이들은 여타의 동시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후 명분에 민감하였다고 할지라도 질적으로 다른 수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선의 화이론자들이 보기에 이들의 제후 명분에 대한 지향・준수는 그렇게 하였다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이어서 결코 자신들의 선구자로 간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석, 앞의 글, 2017, 172-177면 참조.

27) 노명호, 앞의 글 참조.

28) 노명호, 같은 글, 34-35면.

하였을 것이다.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부재한 제도의 수용·운영은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결과적으로는 황제 제도를 운영한 셈이 되어서, 황제국 체제의 구현은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마다 황제 제도를 선택·운영하면 되는 것이어서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 할 수 있다.[29] 그런데 황제 제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이처럼 비교적 난도가 낮은 일을 못 한 셈이다.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지적 성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베트남에서처럼 황제국 체제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던 듯하다. 황제 제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 황제 제도를 선호·운용한 사례는 적지 않았고, 이들은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제후 제도를 선호하는' 인물들이 정국을 주도하였을 당시에 제후 제도로 격하한 것들 가운데 일부를 황제 제도로 복구하기도 하였긴 하나(교서→조서 등), 이러한 행보를 온전한 황제국제를 구현·운용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로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하다. 황제 제도를 선호한 인사들은 구래의 제후 제도들을, 정확히는 국초 이래로 운용해 온 제후 제도들을 황제 제도로 격상하는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고려 군주의 공식 칭호를 '왕'으로 한 것 및 이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시호+大王, 王師, 왕작 부재 등)를 손대지 않았다. 또한, 제후 명분을 감안하여 취하였을 조치들을 하나하나 되돌려 놓지도 않았다. 가령 성종대에 圜丘祭를 도입·운용하면서 배제한 冬至祀(원구제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제사)는[30] 이후로도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31] 이러한 면모는 황제 제도의 선호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29) 이에 반해 제후국 체제의 구현은 각종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 제후 제도를 선택·운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 자체가 부재한 제도를 대상으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을 창출하면서 여기서 제후 제도를 선택·운용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 부가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종석, 앞의 글, 2021 참조.

30) 노명호, 앞의 글, 25면.

31) 太廟 제도도 동일 내지 유사하였다. 성종 7년 12월에 고려의 태묘는 5묘 체제로 정해졌다.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7년. "是歲, 始定五廟."; 『고려사』 권61, 지15 禮3 吉禮大祀 諸陵 성종 7년 12월. "始定五廟." 참조. 이는 '諸侯五廟'를 염두에 둔 조치였을 것이다.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있었음을 웅변해주며 동시에 목적의식적으로 황제국제를 지향·구현하는 성향과 의지가 부재하였을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제도 운영의 양상은 이들의 인식론적 성향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일부 황제 제도들은 일관되게 운영되지 못한 채 제후국의 용례들이 섞여들기도 했다. 가령 황제국제인 '宣旨'가 일관되게 사용되다가 원 복속기에 제후국제인 '王旨'로 바뀌는 게 아니라, 원 복속기 이전에도 '왕지'가 사용되곤 했다. 아울러 제후의 명령문서인 '교서'에서 황제가 자신을 일컫는 말인 '짐'이 사용되고, '선지'에서 제후가 자신을 일컫는 말인 '과인'[32] 역시 사용되었으며, 한 문서 내에서 '짐'과 '과인'이 혼용되는 등, 다른 시기였다면 매우 '어색했을' 조합이 심심찮게 확인된다.[33] 심지어는 '제한적 범위에서 제후 제도를 선호하는' 인물들이 정국을 주도하였을 당시에 제후 제도로 격하한 것들 가운데 일부를 황제 제도로 되돌려놓고 나서는 그 이후로도 부분적으로나마 복구 전의 제후 제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령 공식적으로 교서를 조서로 대체하고 나서도 교서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제도 운영의 구체적 양상 역시 황제 제도의 선호가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국제의 구현을 향한 목적의식적인 지향이 부재하였을 사실을 시사한다. 황제 제도의 선호 역시 고려 전기 당시의 지적 환경(에피스테메) 속에서 구현된 것이다. 근대인의 상식·예상과 달리 말이다.

이처럼 고려전기에 황제 제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은 황제 제도를 선호하긴 했지만, 목적의식적으로 황제국제의 구현을 지향·추구하지 않았고, 이와 맞물려 애초부터 황제 제도로만 제도를 운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제도 전반이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의 혼용으로 구성된 양상을 문제시하

12년 3월 을미 참조. 5묘 체제는 성종대 이후로도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가 의종대에 이르러 7묘 체제로 바뀌었다. 이처럼 황제 제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은 제후 명분을 감안하여 이루어졌을 조치를 굳이 황제국제로 개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의종대에 7묘 체제로 개정한 조치도 황제국 제도의 시행 차원이 아니라 중국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고려의 현실에 맞게 편의적으로 제도를 變用한 결과였다. 이상의 고려 태묘제에 관한 서술은 조욱진, 「高麗前期 太廟의 구성과 廟制의 변화」, 고려대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을 참조하였다.

32) 『禮記』, 曲禮下. "諸侯見天子曰, 臣某侯某, 其與民言, 自稱曰寡人, 其在凶服曰, 適子孤."

33) 최종석, 앞의 글, 2015. 이 논문에서 더 많은 관련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지 않았고, 황제 제도의 운용이 철저하지 못해 간간이 그것의 대립 항인 제후 제도가 활용되곤 한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당시의 지적 환경에서 황제 제도를 선호하는 이들은 이 같은 인식적 성향을 갖추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지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국제 운용을 주도한 탓에, 고려전기의 국제는 전반적으로는 황제 제도를 위주로 운용되는 듯하게 비치면서도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가 공존하고, 일부 황제 제도는 그것의 대립 항인 제후 제도와 함께 사용되곤 하는 식으로 불철저하게 운용되는 양상을 노정하였을 것이다.[34]

5. 황제 제도의 선호와 尊君

마지막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는 당시에 어떠한 감각에서 황제를 선호했는지이다. 통념적으로는 고려전기에 황제 제도를 선호하는 이들이 (중국에 대한) 자주적 자세에서 내지 대등의식에서 목적의식적으로 황제국제를 추구·구현하였다고 가정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베트남에서와 달리, 당시 기록에서도 중국(황제)을 의식하면서 자주·대등의식에서 황제 제도를 선호·지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의식에서 황제 제도를 선호한 것이었을까?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명확한 해답을 얻긴 어렵다. 해답이 복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흡할 수도 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尊君' 차원에서 황제 제도를 선호한 듯싶다. 더 정확히는 중국(황제)이라는 대외가 아니라 대내를 의식한 '尊君'이었을 것이다.

후대의 기록이긴 하나 아래의 기사를 실마리 삼아 이 문제를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申碟·李廷龜·盧稷·吳億齡·李弘老·韓浚謙·崔天健·鄭賜湖 등은 의논드리기를, "우

34) 제후 제도를 선호하는 이들도 제한적이나마 國制에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들이 국제를 주도했었더라도, 제후 제도가 상대적으로 더 활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 양상은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 리나라는 제후의 법도를 삼가며 대대로 예의를 지켜 모든 儀章과 名號에 있어 조금이라도 참람한 데 가까우면 모두 피하였습니다. 오직 列聖의 廟號와 陵號 및 后자로 칭한 것 등은 관례로 인습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개 국내의 신민이 君上을 존경하여 받드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한번 간인의 모함을 당하자 상께서 이미 사실을 갖추어 奏聞하였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모든 참람에 관한 것들을 일체 정리하여 바로 잡으려 한다면 의당 명백히 거행해야지 다시 중국 장수가 듣는다고 하여 혐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이 先朝에 관계되어 경솔히 의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구례를 따라 상례의 절목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 장수가 듣는다고 혐의하여 우선 정지하고 추후에 의논하기로 한다면, 다만 중국 조정의 이목을 끝내 가리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리로 보아도 또한 몹시 구차합니다. 시호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부인에 대해 시호를 청하는 의의가 없어서 비록 천자에게 稟命하지는 못하였으나, 제후의 부인과 대부의 처는 모두 시호가 있었습니다. 杜氏의 『通典』에 '부인도 시호가 있었다.'고 하였고, 『公羊傳』에도 '송나라의 共姬를 장례하였다.'고 하여 그 시호를 일컬었으니, 시호가 참람한 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진실로 마땅히 구례를 따라 준행할 것이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였다.[35]

위 기록은 선조 33년 7월 왕비의 훙서 후 시호 등을 올리는 일에 관한 일련의 논의 가운데 하나이다.[36] 정응태 무고 사건, 그중에서도 정응태가 황제에게 올린 奏本에서 참람하게 太祖, 世祖, 列聖, 聖上을 칭한 사실을 문제 삼고 이로 인해 조선 측이 '稱祖稱宗'을 해명하는 일을[37] 겪고 난 후, 선조는 명 장수 등이 얼토당토않게 조선이 僭禮를 행한다고 문제 삼을 수 있음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이와 맞물려 훙서한 왕비에게 시호 등을 올리는 일의 참월 여부 등을 논의토록 했다. 인용문은 이 사안에 대한 申磼 등의 의견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대목은 '廟號와 陵號 및 后자로 칭한 것 등의 소위 황제 제도의 사용이 국내의 신민이 君上을 존경하여 받드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35)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을사.
36)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갑진;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을사;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무신;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경술;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신해;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11일 임자.
37) 『月沙集』 권21, 戊戌辨誣錄. 정응태 무고 사건에 관해서는 허지은, 「丁應泰의 '朝鮮誣告事件'을 통해 본 조·명관계」, 『사학연구』 76, 한국사학회, 2004 참조.

라는 언설이다. 관건은 이를 믿을 수 있느냐인데, 이들 황제 제도가 중국 황제와 대등해지고자 하는 참월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국내 방면에 한정된 尊君 실현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이 언설은 중국을 상대로 한 해명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군신 사이에서 발화된 데다가, 이 언설의 논리상의 전제가 되는 '우리나라는 제후의 법도를 삼가며 대대로 예의를 지켜 모든 儀章과 名號에 있어 조금이라도 참람한 데 가까우면 모두 피하였습니다'라고 한 말이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이다.[38] 기본적으로 제후 명분을 철저히 견지한 채 제후국제를 구현하는 와중에 황제 제도를 극소수 활용하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보가 참월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황제 제도의 사용이 '황제국'과 대등하고자 하는, 혹은 '황제국'을 의식한 채 국가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학계와 일반 대중의 구분 없이 우리 역사에서 황제 제도의 사용에 비상한 관심을 쏟아 온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자주·자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아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기사는 그러한 의식에서가 아니라, 중국 왕조를 의식하지 않은 채 존군 차원에서 황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실현되기까지 하였음을 웅변한다. 황제 제도의 사용에 관한 상상력의 지평을 확장해 주는 것이다.

고려전기에는 조선시대와 맥락이 다소 다를 순 있어도, 중국(황제)을 의식한 자주·대등 의식에서가 아니라, '존군' 차원에서 황제 제도를 사용한 데서는 다른 바가 없는 듯하다. 몇몇 기록들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제왕의 덕은 겸손을 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노자는 '王과 公은 스스로를 孤·寡·不穀이라고 칭한다'라고 하셨다. 한나라의 光武帝는 조서를 내려 상서에서 (황제를) 聖人이라고 칭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공자께서도 역시 仁者나 聖人이라고 자처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하가 임금

38) 조선초기 문물제도 정비의 과정에서 제후국 분의를 철저히 견지한 양상에 관해서는 최종석,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 담론과 예제 질서』, 소명출판, 2016 참조.

> 을 높이고 찬미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 정도에 지나치므로 이는 심히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부터는 모든 상소나 공첩(公行案牒)에서 神聖帝王이라는 호칭을 쓰지 말라" 하였다.[39]

인종은 '오늘날의 신하가 임금을 높이고 찬미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 정도에 지나치므로 이는 심히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여 자신을 '神聖帝王'으로 칭하는 것을 금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을 대상으로 '神聖帝王'이라는 존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 존칭을 사용하였다면, 반드시 제후 명분의 위배 여부가 거론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전기에는 '尊君推美'의 차원에서 '神聖帝王'이라는 존칭이 사용되어 왔고, 인종은 겸손이라는 군주의 덕을 이유로 그것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위 기록 어디에서도 '중국' 황제를 의식하면서 고려 군주를 '신성제왕'으로 높여 부르고자 하는 모습을, 또한 그러하였기에 중국 측이 이를 알고 문제 삼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進三國史記表」에서 김부식이 인종을 '聖上陛下'로 존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40] 김부식은 '제한적 범위에서이긴 하나 제후 제도를 선호하는' 인물—기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화이론자라 칭함—인 데서, 그가 '聖上陛下'를 사용한 것은 고려 군주를 황제국과 대등한 반열에 올려놓고자 하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존군' 차원에서였을 것이다.

고려시대에 황제국을 의식하지 않은 채 단지 '존군' 차원에서 황제 제도를 활용하였음은 節日 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음 기록은 이자겸의 생일을 仁壽節로 칭하고자 한 데 따른 논란에 관한 것이다.

> (인종 2년 7월) 박승중이 이자겸의 생일을 仁壽節이라 부르자고 하니, 김부식은 말하기를, "생일을 節이라고 칭하는 것은 옛날에는 없던 일입니다. 당나라 현종 때 처음으로 황제의 생일을 칭해 千秋節이라고 하였지만, 신하의 생일을 절이라고 한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平章事 金若溫은 "侍郎의 의견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41]

---

39) 『고려사』 권16, 세가 인종 16년 2월 임오.
40) 『동문선』 권44, 表箋 進三國史記表.
41) 『고려사』 권98, 열전 김부식.

이자겸의 생일을 仁壽節로 칭하자는 건의는 이자겸을 여타 신하들과 구별되는 예외적 위상의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일련의 우대 조치—공신으로의 책봉, 봉작 수여, 立府 등— 가운데 하나였다.[42] 신하의 생일을 절일이라 한 적이 없다는 김부식 등의 반대에 맞닥뜨릴 만큼, 이자겸의 생일을 仁壽節로 칭하고자 하는 시도는 공신으로의 책봉, 봉작 수여, 立府 등과 달리 다소 무리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친속을 요직에 널리 배치하고 관작을 팔아 黨與를 다수 심었다. 스스로 國公을 삼고 王太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그의 생일을 仁壽節이라 부르고 중앙과 지방에서 올리는 축하의 글을 箋이라 칭했다(以其族屬 布列要職 賣官鬻爵 多樹黨與 自爲國公 禮數視王太子 號其生日仁壽節 內外賀謝稱箋)"라는[43] 구절에서 보듯, 그의 생일을 仁壽節이라 한 조치는 그에 관한 부정적인 서술 가운데 기술되고 있었다. 이자겸 세력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절일을 제정하고 한 것은 이자겸의 위상을 일반 신하를 초월하여 왕태자에 준하는 지위에 올려 놓고자 하는 일환에서였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대외 방면이 아니라 대내 방면을 의식한 행위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자겸이 국내 방면에서의 자신의 특별한 위상을 부각하기 위해 절일을 활용한 사실은 당시 고려에서 절일이 어떻게 인식되고 기능해 오고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대외 방면을 의식하고 행하는 조치가 아니라 대상자를 국내에서 더욱 높이는 기능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할 때 국왕을 대상으로 한 절일 제정은 국내에서 국왕의 위상을 더 높이고자 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국왕을 '神聖帝王', '聖上陛下'로 부르기도 한 것과 같이 말이다.

절일 제도는 현재 대표적인 황제 제도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성종대에 시작되어[44] 그 이후로 지속된 것으로,[45] 충렬왕 33년 6월 병

42) 『고려사』 권125, 열전38 박승중; 『고려사』 권127, 열전40 이자겸.
43) 『고려사』 권127, 열전40 이자겸.
44)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원년 6월. "以王生日, 爲千春節. 節日之名, 始此."
45) 고려의 절일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서금석, 「고려국왕 생일 節日에 대한 검토」, 『한국민족문화』 6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오일에 이르러 참월함을 이유로 개정되었다. 절일이 '誕日'로 바뀐 것이다.[46] 당초에는 국왕의 생일만 절일로 칭하다가, 이후에는 국왕 외에도 왕태자와 왕태후의 생일을 '○○節'로 칭하기도 하였고, 그러다 심지어 이자겸의 생일까지 절일로 칭하게 된 것이다. 고려에서 절일 활용의 방식은 절일이 '황제국'과 대등하고자 하는, 혹은 '황제국'을 의식한 채 국가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왕을, 그리고 추후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왕태자와 왕태후를 보다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정되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자면, "어머니인 柳氏를 높여 왕태후로 삼고 그 전각을 일러 天和殿, 府를 일러 崇明府, 생신을 일러 至元節이라 하였다(尊母柳氏爲王太后 殿曰天和 府曰崇明 生日曰至元節)"[47]라고 하여, 예종은 즉위 후에 어머니인 유씨를 높여(尊) 왕태후로 삼고는 그녀의 생일을 '至元節'로 칭하였다. 원 복속기 이전에 后妃 가운데 開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왕태후로 한정되고 절일도 마찬가지였다.[48] 后妃 가운데 왕태후의 생일에 한정해 절일을 제정한 사실은 이때의 절일 제정이 황제국을 의식한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왕이 자신의 모후를 여타 后妃에 비해 더욱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의 일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자겸의 경우 또한 중국의 황태자와 같은 위상에 견주고자 그의 생일을 仁壽節로 칭하지는 않았을 게 분명하다. 이자겸의 생일을 仁壽節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외 방면을 의식하는 흔적은 전혀 없고, 일반 신하의 위상을 초월하고자 하는 식의 대내 방면의 의도만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흥미롭게도 김부식은 황제의 생신을 절일로 칭하는 것이지, 신하의 생일을 절일로 칭하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잣대를 성종대 이래로 국왕의 생신(경우에 따라서는 왕태자·왕태후의 생일)을 절일로 칭해 온 일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고려 국왕 또한 황제에게 신하를 칭하는(稱臣) 위치에 있기에, 그의 논리대로라면 고려 국왕의 생일을 절일로 칭하는 것도 불가

46) 『고려사』 권67, 지21 예9 가례3 王太子節日受宮官賀幷會儀, 충렬왕 33년 6월 丙午. "以壽元天聖節, 似涉僭擬, 改以誕日稱之."
47) 『고려사절요』 권7, 예종 즉위년 10월.
48) 이정란, 「고려시대 后妃府에 관한 기초적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20, 한국중세사학회, 2006, 57-67면 참조.

한 일이지만, 김부식은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49] 김부식이 국왕의 절일 제정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절일이 황제 제도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감각에서는 국왕의 절일 제정을 참월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존군 차원에서 행해지는 자연스러운 일로 수용한 데서였을 것이다. 그가 존군 차원에서 국왕을 '聖上陛下'로 칭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아래의 『고려사』 윤언이 열전 기록 또한 연호 제정이 존군의 맥락에서 추진되었음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 연호를 제정하자고 건의한 것[立元之請]은 임금을 높이려는 성심[尊主之誠]에서 나온 것으로 이미 본조에서는 태조와 광종의 전례가 있습니다. 옛날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비록 신라와 발해가 그렇게 했으나, 큰 나라는 한 번도 정벌에 나서지 않았으며 작은 나라는 감히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聖世에 그 일을 두고 오히려 명분에 어긋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50]

윤언이는 '연호를 제정하자고 건의한 것[立元之請]이 임금을 높이려는 성심[尊主之誠]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하여, '立元'이 '尊主'의 차원에서 건의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신라와 발해에서 연호를 사용한 적이 있고 고려의 태조와 광종대에도 그러하였음에도 중국 왕조에서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는데, 聖世인 현재에 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변했다. 윤언이에게 연호 사용은 '중국 왕조'를 의식한 외향적 성격의 일이 아니라 국내에서 존군 차원에서의 일이기에, 그는 이를 '僭行'으로 몰아붙이는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 윤언이가 보기에, 국내라는 범위에 한정된 연호 사용은 책봉국 측에서 문제 삼지 않은 일이고 황제국을 지향하여 중국과 대등하고자 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또한, 단속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어, 존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당시를 聖世로 본

---

49) 그가 고려국왕을 황제로 보아 절일을 칭해야 한다고 믿어 고려 국왕의 생일을 절일로 칭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싶다. 김부식은 기존 연구에서 제후 명분을 중시하는 화이론적 천하론 계열의 대표 인물로 간주될 정도로, 고려전기 관료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후 명분을 중시하는 축에 든 점에서 그렇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명호, 앞의 글 참조.

50) 『고려사』 권96, 열전9 윤관 부 윤언이.

윤언이는 이에 걸맞게 연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51]

'존군' 차원에서 황제 제도의 운용은 군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위상을 고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광종 11년에 "開京을 皇都라 하고 西京을 西都라 하였다."[52]라고 한 조치가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고려초기의 일이긴 하나, 황제 제도가 어떠한 지적 맥락에서 활용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조치는 광종대 추진된 일련의 왕권강화책[53]과 맥이 닿아 있었을 것이다. 중국 왕조를 의식한 측면은 전혀 보이지 않은 데서, 개경을 황도로 한 조치는 특히 왕위를 위협하는 무장공신세력들을 겨냥해 그의 위상을 고양하고자 한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54]

6. 맺음말

종래의 연구는 고려의 국제가 황제국 체제였고, 그러한 체제는 중국 왕조를 의식한 자주 ·대등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는데, 본고에서는 졸고에서 규명한, 황제국 체제와 거리가 먼 고려 나름의 國制 양상이 어떠한 지적 맥락에서 성립·운영되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검토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고려 나름의 國制 양상은 이것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 의식적 움직임의 결과가 아니었다. 고려전기 國制 양상의 구현은 다소 맹목적 움직임들의 수렴 결과라 할 수 있다.

---

51) 위 인용문은 '윤언이는 정지상과 함께 死黨을 맺어 고려가 '立元稱號' 등을 하도록 하여 금을 격노하게 하여 일을 만들고 그 틈에 반역을 도모하고자 했다'라는 中軍의 上奏에 대한 해명 가운데 일부로, 윤언이는 대외(금)에까지 미치는 칭제건원을 주장한 정지상을 포함한 묘청 일파와 달리 자신은 존군 차원에서 국내에 한정된 立元을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정지상을 포함한 묘청 일파의 칭제건원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 묘청; 『고려사』 권16, 세가16 인종 12년 12월 무인 참조.

52)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11년 3월.

53) 이기백 편, 『高麗光宗硏究』, 일조각, 1981; 김갑동,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참조.

54) 광종대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왕위를 위협하고 왕위계승에 간여하는 무장공신세력(흔히 호족과 공신이라 불리는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로 각종 개설서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의 混種的 면모, 일부 황제(제후) 제도의 불철저한 운영 등을 특징으로 한 고려전기 國制는 특정한 성격을 부여하긴 어렵지만 중국 제도로 구성된 국제('중국적' 국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그것은 중국 제도를 토대로 국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 분위기 속에서 구현되었을 것이다. 다만 중국 제도를 토대로 국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하는 知的 분위기는 황제국 체제도, 제후국 체제도, 고려 나름의 국제 양상도 구현할 수 있는 것인 까닭에, 고려전기 국제에 작용한 지적 환경 가운데 가장 저변에 자리하였을 遠因에 해당할 것이다.

셋째, 고려전기에는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 자체가 부재하여 황제 제도로 인지되지도 못하였을 제도가 드물지 않게 존재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황제 내지 제후 제도를 대상으로 한 이념적이고 일관적인 선호가 미미·부재하였다. 이러한 지적 환경 속에서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의 혼용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 제도의 도입·운용 과정에서 자주 의식(대등의식) 내지 이와 대립되는 (제후)명분 의식 따위의 특정한 목적의식이 의미 있게 작용하지 못하는 지적 여건에서, 중국 제도를 전면적이다시피 수용·운용한 움직임은 후대인의 시각에서이긴 하나 의도치 않게 황제 제도를 위주로 한 국제 운용을 초래하였다. 고려전기에는 황제 제도로 인지되지도 못하였을 제도, 달리 말해,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 자체가 부재하여 황제 제도로 인지되지 못하였을 중국 제도의 대폭 수용은 후대의 시각에서는 '황제 제도'의 대폭 수용으로 비치나, 그 당시의 감각에서는 唐制를 위주로 한 '중국 제도'의 수용일 따름이었을 것이다.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존재한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도 목적 의식적으로 황제 제도를 선호하지 않았어도 황제 제도를 위주로 도입·운용한 것은, 이들 이항대립 관련한 제도의 도입·운용 당시에 황제 제도보다는 중국 제도를 내세웠어도,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 가운데 제후 제도가 아니라 황제 제도가 도입·운용하고자 하는 당제(송제)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된 데서였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제후 제도여서 황제국인 당(송)에서 활용될 일이 없거나 미미한 제도는 굳이 도입

·운용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황제 제도 위주의 수용·활용은 목적의식적으로 황제 제도를 선호한 결과가 아니다 보니, 적게나마 제후 제도의 혼용이 이루어진 것은 이상할 게 못 되었을 것이다.

다섯째,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을 놓고 선호의 차이는 지배층 내에 존재하였을 것이지만, 당시의 지적 환경에서는 이러한 선호 차이와 상관없이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부재한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는 공히 황제 제도와 연관하여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존재한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도 선호를 달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을 놓고서도 선호를 달리하는 경우보다는 공통분모가 훨씬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지배층 내에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을 놓고 선호의 차이가 있곤 했지만,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 가운데 어느 것을 선호하는 쪽이든 황제국제/제후국제의 구현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제후 제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제후국제의 구현과 동떨어진 행보를 노정하였음은 물론이요, 수적으로든, 영향력 면에서든, 시기 면에서든 사실상 국제를 좌지우지하였을 황제 제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이들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황제 제도를 선호하긴 했지만, 목적의식적으로 황제국제의 구현을 지향·추구하지 않았고, 이와 맞물려 애초부터 황제 제도로만 제도를 운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제도 전반이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의 혼용으로 구성된 양상을 문제시하지 않았고, 황제 제도의 운용이 철저하지 못해 간간이 그것의 대립 항인 제후 제도가 활용되곤 한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러한 지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국제 운용을 주도한 탓에, 고려전기의 국제는 전반적으로는 황제 제도를 위주로 운용되는 듯하게 비치면서도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가 공존하고, 일부 황제 제도는 그것의 대립 항인 제후 제도와 함께 사용되곤 하는 식으로 불철저하게 운용되는 양상을 노정하였을 것이다.

일곱째, 황제 제도의 선호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일관적이지도 않았는데, 제한적이나마 발현된 황제 선호는 통념과 달리 중국을 의식한 자주적 자세에서 내지 대등의식에서가 아니라, 대내를 의식한 '尊君'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들 지적 움직임들은 서로 위계와 영향 정도를 달리하면서 다소 맹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려 나름의 國制 양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이들 움직임은 상호 간에 상쇄와 증폭 등의 상호 작용을 하였을 것이고, 고려전기 國制 양상은 이들 상호 간의 복잡한 작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름 안정된 상태로 귀결되어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작업의 한계를 밝히자면, 여기서 간과한 지적 움직임이 분명 있을 것이고, 적시된 인식적 맥락에 대한 이해 정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 지적 움직임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도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정 이념이나 목적의식의 미미함·부재 속에서 그때그때의 사안을 해소하는 움직임들이 축적되고 수렴되는 식으로 國制 양상이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문제의식에서 그러한 식으로 성립되었을 國制 양상의 구현에 작용한 지적 움직임을 추적하고자 한 본 작업이, 애초에 의도된 바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권영국,「고려전기의 행직(行職)과 수직(守職)」,「역사와 현실」86, 한국역사연구회, 2012, 75-107면.

김갑동,『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노명호,「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한국사연구』105, 한국사연구회, 1999, 3-40면.

박재우,「고려 君主의 국제적 위상」,『한국사학보』20, 고려사학회, 2005, 45-79면.

박종기,「고려 다원사회의 형성과 기원」,『한국중세사연구』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109-140면

_____,『고려사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5.

박한남,「고려시대 대외관계사의 흐름과 서희의 위상」,『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이천시서희선생 선양사업추진위원회, 2008.

배재호,「고려전기 武散階와 鄕職의 수여 배경과 운용」,『한국사론』66, 서울대 국사학과, 2019, 1-46면

서금석,「고려국왕 생일 節日에 대한 검토」,『한국민족문화』6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3-40면.

송기호,「대외관계와 국가위상」,『(개정신판)한국사특강』, 서울대 출판문화원, 2008.

유인선,『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2012.

이기백 편,『高麗光宗硏究』, 일조각, 1981.

이익주,「10-12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려」,『동아시아사 입문』(동북역사재단 편집부 편), 동북역사재단, 2020.

이정란,「고려시대 后妃府에 관한 기초적 검토」,『한국중세사연구』20, 한국중세사학회, 2006, 55-94면.

조욱진,「高麗前期 太廟의 구성과 廟制의 변화」, 고려대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최종석,「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진단학보』125, 진단학회, 2015, 1-38면.

_____,「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조선시대 예교 담론과 예제 질서』, 소명출판, 2016.

_____,「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민족문화연구』7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61-220면.

_____,「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역사학보』250, 역사학회, 2021, 1-42면.

허지은,「丁應泰의 '朝鮮誣告事件'을 통해 본 조·명관계」,『사학연구』76, 한국사학회, 2004, 169-205면.

山本達郎 編,『ベトナム中國關係史—曲氏の擡頭から淸佛戰爭まで—』, 山川出版社, 1975.

桃木至朗,「ベトナムの「中国化」」,『變わる東南アジア史像』(池端雪浦 編), 山川出版社, 1994.

桃木至朗,『中世大越國家の成立と變容』, 大阪大學出版會, 2011.

陈文源,「13-15世纪安南的国家意识与文化取向」,『世界历史』, 中国社会科学院世界历史研究所, 2014年 第6期, 17-25면.

【Abstract】

Epistemological Contexts of Koryo-style Political Regime

Choi, Jong-Suk*

I had explored the actual aspects of the dual system of the early Koryo Dynasty, which were heterogeneous from Vietnam, through comparison with the premodern Vietnamese case of practicing the "Feudal Exterior/Imperial Interior" doctrine(外王內帝). This paper is a companion study to this previous research, and it is a research work that explores the intellectual context in which the aspects of the dual system of the early Koryo emerged and resulted.

In my view, not only the aspect but also the intellectual environment that acted on the dual system aspect of the early Koryo itself was heterogeneous from Vietnam. Relying on it, I explored a new intellectual context. Especially, I tried to clarify the intellectual context in which aspects of the political system unique to Koryo we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focusing on political regime. Previous studies have seen that the political system of Koryo was an imperial system, and that such a system was derived from a consciousness of independence against the Chinese dynasty and a consciousness of equality with the Chinese dynasty. Contrary to this approach, I explored in what kind of intellectual context it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Keywords: political regime, emperor institution, lord institution, Chinese institution, Koryo, raising the status of monarch.

접수일: 2021.06.29. ‖ 심사일: 2021.07.08. ‖ 게재확정일: 2021.08.13.

*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Dongduk Women's Univ.